## [현장실사] 완료신고(공장등록,사업개시) 신청 방법 안내

① 서류 준비 ② 현장실사 일정 협의 → ③ 현장실사 한단의 신청서류 준비! ○ 실사(현장방문) 일정 유선협의 ○ 현장 및 신청서류 확인 및 접수

※ 제조업: 공장등록 / 비제조업: 사업개시

안녕하십니까,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입주지원팀입니다.

산업단지에서 제조업 등을 영위하시는 경우, 입주계약(1단계, 사전심사)와 <mark>완료신고(2단계, 현장실사)</mark>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.

완료신고는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 후 3일 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.

완료신고를 위해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 (팩스 등 접수 불가, 현장 제출)

## [ 필수 ]

- 1-1. 제조업 : 공장설립신고서(별첨 참조 작성 및 날인)
- 1-2. 비제조업: 사업개시신고서(별첨 참조 작성 및 날인) 및 증빙서류\*
  - \* 매출 발생사항, 인력현황, 기타 증빙가능자료(연구보고서, 디자인 제작안, 설계도서 등)
- 2. 사업자등록증 사본(해당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)
- 3. 집합건물(해당호실) 등기사항증명서(최근 3개월 이내, 제출용)

## [해당사항 있는 경우]

- 1. 환경 관련 배출물질이 있는 경우, 배출시설 인허가증 사본
- 2. 법인인 경우, 법인등기부등본

아울러, 입주계약에 날인하셨던 <mark>인감을 준비</mark>하여 수정사항 발생 시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공장승인번호 등 모르시는 부분은 비워주세요! → 현장에서 수정 가능)

완료신고는 구비서류가 구비되시고, 반드시 "기계장비 설치 및 가동" 이후, 일정을 잡아주시면 됩니다.

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 10분 내외로 완료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\* 현장실사 일정 협의: 070-8895-7534 (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입주지원팀)

## 공장등록증/사업개시신고서 온라인 발급 방법 안내

\* 완료신고(공장등록, 사업개시) <mark>승인 이후, 발급 가능</mark>하십니다.

